KOSHA GUIDE

C - 56 - 2017

- (라) 해체물의 처리계획
- (마) 해체작업용 기계·기구 등의 작업계획
- (바) 기타 안전·보건에 관련된 사항
- (2) 소음, 진동, 분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작업현장 주변에 방음막, 방진막,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해체작업현장과 사무실 간의 연락, 해체작업중의 신호 등을 위하여 연락설비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한 후 위험구역 내에 공사관계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4) 리모델링 대상구조물에서 부분적으로 슬래브, 보, 기둥, 벽체 등의 부재를 해체할 때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부재신설공법 등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붕괴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5) 해체된 잔재물은 비계, 작업발판 등에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리프트. 승강기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지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(6) 구조물의 해체작업에 의한 개구부 발생시 덮개, 안전난간,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, 안전화,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7) 사전조사 사항을 근거로 하여 공사기간, 시공성, 안전성, 경제성, 공해 등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주변현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.

나. 해체공법에 따른 안전사항

- (1) 강구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강구가 크레인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접속부위 및 와이어로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(2) 브레이커 공법에 의한 해체작업 시 파편이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음, 진동에 의한 소음성 난청, 진동장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귀마개, 방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